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10114 판결 [명의신탁 해지에 의한
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종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8. 14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. 2. 1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오주영

별지